KOSHA GUIDE

T - 26 - 2023

실험동물의 부검 절차 및 육안 소견 작성을 위한 기술지침

2023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임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
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 조은상
- 제·개정 경과
-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8년 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3년 7월 산업독성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독성병리용어집 (국립독성연구원, 행정 간행물 등록번호 11-1470129-000078-01)
 - 독성병리용어집 (한국독성병리학회, ISBN 9791189210687 93510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(유해성·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)
- 고용노동부예규 제203호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헙성 평가에 관한 규정)
-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3년 8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<u>목 차</u>

| 1. | 목적1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. | 적용범위1 |
| 3. | 용어의 정의1 |
| 4. | 실험동물 부검의 범위2 |
| 5. | 부검 방법2 |
| 6. | 육안 소견의 기술4 |
| 7. | 장기 중량 측정 방법4 |
| 8. | 고정 방법 및 절차5 |
| <부록 | 록 1> 체표의 부위 및 장기명7 |
| <부록 | 록 2> 일반적 소견8 |

실험동물의 부검 절차 및 육안 소견 작성을 위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,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에 의한 독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평가시험의 병리조직학적 검사 방법 중 부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자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거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유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평가 기법 중 랫드 및 마우스의 부검에 대해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실험동물(Laboratory animal)"이란 독성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사용되는 랫드, 마우스 등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.
- (나) "부검(Necropsy)"이란 사인을 밝히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 사체의 내·외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장기 등을 채취해 검사하게 된다.
- (다) "고정(Fixation)"이란 채취된 장기의 사후 변화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액에 침지해 장기 내 미세구조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실험동물 부검의 범위

- (1) 부검: 실험동물의 장기를 채취하고, 관찰한 부검소견을 기록한다.
- (2) 중량측정: 장기중량을 측정한다.
- (3) 고정: 채취된 장기를 정해진 고정액에 고정한다.
- (4) 사진촬영: 이상소견이 관찰된 장기에 대하여 필요시 사진을 촬영한다.

5. 부검 방법

- (1) 부검절차
 - (가) 사전 부검회의: 부검 전에 특이사항, 일반증상 등을 공유하고 숙지한다.
 - (나) 부검준비: 기록에 필요한 서식, 부검소모품, 시약 등을 준비한다.
 - (다) 장기 적출 및 육안소견 관찰: 외표면의 병변을 관찰한 후, 장기를 적출하면서 육안 소견을 관찰한다.
 - (라) 장기중량 측정: 장기중량을 측정한다.
 - (마) 적출 장기의 고정: 장기별로 적절한 고정액을 사용한다.
- (2) 부검시 주의사항
- (가) 부검은 안전하고, 배기시설이 갖추어진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(나) 여러 마리를 부검할 때는 개체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 부검 절차마다 반복 확인한다.
- (다) 장기·조직의 기계적 손상, 건조, 자가융해 등을 피하도록 주의한다.
- (라) 작거나 취약한 장기의 취급(핀셋에 의한 압박, 가위에 의한 절단 등)에 주의한다.

- (마) 여러 개의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, 누락되는 장기가 없도록 적출 순서를 정하여 지킨다.
- (바) 부검 시 관찰된 육안소견은 즉시 기록한다.
- (사) 투여 방법에 따라 적출 장기 및 적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숙지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.

(3) 장기적출 방법

- (가) 장기 적출 순서나 방법은 동일 기관내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순서와 방법 으로 수행한다.
- (나) 아래의 방법은 예시이며, 기관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수행한다.
 - ① 양측성 장기는 좌·우가 구분이 되도록 부검판에 놓는다.
 - ② 방광은 고정액의 주입이 가능하도록 방광경 부분을 실로 묶는다. 수컷은 정낭샘과 함께, 암컷은 질과 함께 적출한다.
 - ③ 난소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난소와 난관을 분리한다.
 - ④ 자궁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포함되도록 질과 분리한다.
 - ⑤ 위는 고정액을 주입한 후 절개하여 내면을 관찰한다.
 - ⑥ 폐는 적절한 위치에서 기관을 절단하여 기관과 함께 적출한다.
 - ⑦ 대동맥은 동일한 위치에서 적출한다.
 - ⑧ 시신경은 안구 혹은 하더샘과 함께 적출한다.
 - ⑨ 뇌의 후각망울은 일관성 있게 포함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무릎관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대퇴골과 경골을 함께 적출하여 무릎관절 이 포함되도록 한다.

- ① 젖샘은 피부와 함께 적출한다.
- ① 시험방법에 따라 비강을 제작하는 경우 머리뼈의 일부와 함께 적출한다.

6. 육안소견의 기술

(1) 부검소견은 소견이 관찰된 장기명과 소견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, 위치, 수, 색깔, 크기 등을 추가할 수 있다.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관찰한다.

| 일반장기, 종양 | 복강 및 흉강 | 표면/단면 | 액체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
| 위치 | 용적 | 색/문양 | ्रोः |
| 형태 | 벽의 성상 | 변색 | 점도 |
| 크기 | 내용물 | 침착물 | 색상 |
| 중량 | | 혈액함유 | 투명도 |
| 색조 | | 냄새 | |
| 경도 | | | |

- (2) 가능한 진단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서술적 방식을 이용한다.
 - * 예시 : 뇌하수체 종양 → 뇌하수체, 덩어리(Mass), 색상, 크기, 액체 함유 여부
- (3) 체표의 부위, 장기명과 일반적인 소견명은 부록1 및 2에 나타내었다.

7. 장기 중량 측정 방법

- (1) 장기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.
- (2)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.
- (3) 정확한 장기 중량 측정을 위하여, 지방조직 및 주변조직을 트리밍한다.
- (4) 갑상샘 및 정낭샘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고정 후 주위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중량을 측정한다.

- (5) 양측성 장기는 목적에 따라 좌·우를 함께 측정하거나, 좌·우를 구분하여 따로 따로 측정할 수 있다.
- (6) 중량 측정 장기에 종괴(Mass)가 있거나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너무 심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장기를 그대로 두고 중량을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8. 고정방법 및 절차

(1) 고정의 준비

- (가) 고정액의 분주: 부검 전에 필요량만큼 고정병을 확보하여 고정액을 분주하고, 고정액명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둔다.
- (나) 보호구 착용: 고정액을 조제하거나 취급할 때는 수술용 고무장갑, 보호안 경,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배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한다.

(2) 고정의 종류

- (가) 10% 중성완충 포르말린 용액(10% Normal buffered formaline, 10% NBF): 대부분의 조직 고정에 사용할 수 있다.
- (나) 보우잉 용액(Bouin's solution): 태자, 고환, 안구, 피부 등의 고정에 잘 이용되나, 세포질내 봉입체를 관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. 큰 공포가 조직 내에 종종 형성된다.
- (다) 다비슨 용액(Davidson's solution): 고환, 안구 등의 고정에 주로 이용된다.

(3) 고정시 주의사항

(가) 장기의 특성에 따라 고정액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. 통상적으로 고환, 안구 및 시신경은 다비슨 용액에 그 이외의 조직은 10% 중성완충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다. 고환은 필요에 따라 보우잉 용액에 고정하기도하다.

- (나) 채취한 조직을 고정병에 넣을 때는 고정병에 붙어 있는 개체번호를 반드 시 확인하여 다른 개체의 고정병에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(다) 고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로 일정한 부위를 절개하여 고정하 며 필요하다면 교반한다.
- (4) 고정장기 분실 또는 혼입시 처리방법
- (가) 고정장기를 취급하다가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부검 동물을 확인하여 분실된 장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, 분실이 확인되면 그 조직 명과 사유를 명기한다.
- (나) 고정장기가 혼입된 경우에도 혼입된 개체번호를 기록하고, 조직명과 사유를 명기한다.

<부록 1> 체표의 부위 및 장기명

| 영문 | 국문 | 영문 | 국문 | 영문 | 국문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Abdomen | 배, 복부 | Hindlimb | 뒷다리 | Pituitary gland | 뇌하수체 |
| Adrenal gland | 부신 | Hip | 엉덩이 | Preputial gland | 포피샘 |
| Antebrachium | 아래팔이래 앞다리 | Inguina | 샅 | Prepuce | 음경꺼풀 |
| Aorta | 대동맥 | Jejunum | 공장 | Prostate | 전립샘 |
| Axilla | 겨드랑 | Joint | 관절 | Rectum | 직장 |
| Back | D O | Kidney | 콩팥 | Salivary gland | 침샘 |
| Bloody vessel | 혈관 | Knee | 무릎 | Scrotum | 음낭 |
| Brachium | 위팔, 위 앞다리 | Lacrimal gland | 눈물샘 | Seminal vesicle | 정낭샘 |
| Brain | 거 | Larynx | 후두 | Skeletal muscle | 골격근 |
| Body cavity | 체강 | Lip | 입술 | Shoulder | 어깨 |
| Bone | 睄 | Liver | 간 | Skin/subcutis | 피부/피하 |
| Bone marrow | 골수 | Lumbus | 허리 | Spleen | 비장 |
| Cecum | 맹장 | Lung | 폐 | Spinal cord | 척수 |
| Clitoral gland | 음핵샘 | Lymph node | 림프절 | Soft tissue | 연부조직 |
| Coagulating gland | 응고샘 | Mammary gland | 젖샘 | Stomach | 위 |
| Colon | 결장 | Mandibula | 아래턱뼈 | Tail | 꼬리 |
| Cranium | 머리뼈, 두개골 | Manus | 앞발 | Testis | 고환 |
| Duodenum | 십이지장 | Nasal cavity | 비강 | Thyroid | 갑상샘 |
| Ear | 귀 | Maxilla | 위턱뼈 | Thorax | 가슴 |
| Elbow | 앞다리굽이 | Mouth | 입 | Tongue | 혀 |
| Epididymis | 부고환 | Neck | 목 | Tooth | ०] |
| Esophagus | 식도 | Nose | 코 | Trachea | 기관 |
| Eye | 눈 | Oral cavity | 구강 | Trunk | 몸통 |
| Face | 얼굴, 안면 | Ovary | 난소 | Ureter/urethra | 요관/요도 |
| Femur | 넓다리뼈, 대퇴골 | Pancreas | 이자 | Urinary bladder | 방광 |
| Flank | 옆구리 | Parathyroid | 부갑상샘 | Thymus | 가슴샘 |
| Forelimb | 앞다리 | Perineum | 회음 | Uterus | 자궁 |
| Gall bladder | 쓸개 | Peripheral nerve | 말초신경 | Vagina | 질 |
| Harderian gland | 하더샘 | Pes | 뒷발 | Vulva | 외음부 |
| Head | 머리 | Pineal gland | 솔방울샘 | Zymbal's gland | 짐발샘 |
| Heart | 심장 | | | | |

<부록 2> 일반적 소견

| 영문 | 국문 | 영문 | 국문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Adhesion | 유착 | Hernia | 헤르니아, 탈장 |
| Amputation | 절단 | Increase | 증가 |
| Autolysis | 자가용해 | Invagination | 안쪽말림, 함입 |
| Bending | 굽이, 굴곡 | Lesion | 병터, 환부 |
| Calculus | 돌, 결석 | Malformation | 기형 |
| Callosity | 굳은살 | Malposition | 위치이상 |
| Cannibalism | 상호포식 | Mass | 덩이, 덩어리, 종괴 |
| Clot | 덩이, 떡 | Missing | 분실 |
| Colored | 착색된 | No abnormality | 이상소견 없음 |
| Compression | 압박 | Nodule | 결절, 소절 |
| Congestion | 울혈 | Not examined | 관찰하지 않음 |
| Consolidation | 경화 | Obstruction | 막힘, 폐쇄 |
| Cyst | 주머니, 낭, 낭포 | Pale | 창백한 |
| Decrease | 감소 | Petechia | 점상출혈 |
| Defect | 결손 | Recessed area | 함몰부, 함몰구역 |
| Deformity | 변형 | Retraction | 뒤당김, 퇴축 |
| Detachment | 박리 | Rigor mortis | 사후경직, 사강 |
| Dilatation | 확장 | Rough surface | 거친면 |
| Elevated area | 융기부, 융기구역 | Rupture | 터짐, 파열 |
| Elongation | 연장 | Small | 작은 |
| Emaciation | 수척 | Soft | 부드러운 |
| Enlargement | 종대, 확장, 팽대 | Soiled | 지저분한 |
| Exudate | 삼출물 | Spot | 점 |
| Fistula | 샛길, 누 | Stenosis | 협착 |
| Fluid | 액체, 액 | Thickening | 비후 |
| Focus | 병소 | Thinning | 얇아짐 |
| Foreign body | 이물, 이물질 | Transposition | 자리바뀜, 전위 |
| Hard | 단단한 | Trauma | 외상 |
| Hemorrhage | 출혈 | Wound | 상처 |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3. 8. 24.

○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 조은상

-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조항 등 변경
-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 →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평가 및 관리)
- 시행규칙 제142조(유해성·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) 추가
-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 추가
- 주요 개정내용
 - 육안 소견 진단을 위한 상세 사항 및 부록 추가 등